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672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09. 27.

정영환 의원 등 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10. 19.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고성군 관내에서 경로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34호

- 예고기간: 2023. 9. 27.(수) ~ 2023. 10. 6.(금) [9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고성군 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음.

- 정의(안 제2조)

◦ 미등록 경로당을 회원 5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이상, 6개월 이상 상시 운영 시설로 명확히 정의하여 임의 해석을 방지하였음.

◦ 경로당 등록기준(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7)

▶ 시설규모: 이용정원 10명 이상

▶ 시설기준: 화장실 1, 거실 또는 휴게실 1, 전기시설 1

▶ 설비기준: 거실 또는 휴게실 20㎡이상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미등록 경로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군수로 책무로 규정하였음.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미등록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 실태 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 규정으로 두었음.

-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5조)

◦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보조하거나 현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유도과 미등록 시설 지원 최소화를 위해 10년간 한시적 지원 토록 규정하였음.

- 지원범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보조금 반환(안 제6조)
 -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보조금 지원 중지와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음
- 적용범위(부칙 제2조)
 - 적용범위를 조례 시행일 이전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로 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의 추가 발생을 억제하고 지원을 최소화하였음.

○ 본 조례안은 법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집행부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회보장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조례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10. 19. 원안가결